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6. 26.

발의자 : 송언석 · 장석춘 · 원유철
김정재 · 신보라 · 추경호
박맹우 · 박명재 · 김수민
김한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 등록대수 2,300만대, 애프터마켓의 규모 1.2조원 등 자동차 및 튜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튜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향후에는 ECU, 전자장치, 첨단운전보조장치,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첨단장치 등의 튜닝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.

또한, 튜닝 활성화와 국민의 튜닝 편의성 향상을 위해 튜닝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튜닝업체가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튜닝할 수 있도록 지속적·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바,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

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7조제6항제2호의2·제2호의3 신설).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
(이하 “자동차 튜닝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
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
제77조제6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·연구
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

2의3.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
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의2(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4조의2(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(이하 “자동차 튜닝 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</u></p>
<p>2. · 3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</u></p>

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• 4. (생 략) ⑦ ~ ⑪ (생 략)</p>	<p><u>한 업무</u></p> <p><u>2의3.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</u> <u>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</u> <u>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</u> <u>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업</u> <u>무</u></p> <p>3. • 4. (현행과 같음) ⑦ ~ ⑪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